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044-414-1156)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e@kiep.go.kr, 044-414-1089)

김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044-414-1031)

차 례

1.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경과
2. MC12 주요 의제별 쟁점과 합의 내용
3. 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 164개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개최된 MC12에서 폐막을 이틀 연기한 끝에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함.
 - 제네바 패키지는 MC12 결과문서, 3개의 '각료선언'(①식량위기 대응 ②팬데믹 대응 ③동식물검역), 6개의 '각료결정'(①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②지재권 일시면제 ③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④수산 보조금 철폐 ⑤소규모경제 ⑥지재권 비위반제소)으로 구성됨.
 - 미국이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 절충과 타협을 주도하면서 패키지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식량위기 확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 다자무역협상 지속을 위한 합의 도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20년 이상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의 불법어업 및 남획어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다자간 합의로 도출했으며, 이는 2013년 발리 각료회의(MC9)에서 무역원활화 합의를 도출한 이후 첫 WTO 다자간 협상 성과임.
 - 다만 일부 협상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내용이 있어,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2023년 12월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우리의 이해관계가 담긴 협상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 제네바 패키지에 따른 후속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 준비가 필요함.
 - MC12 이후 논의될 제네바 패키지 후속 논의 주제 ①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후속 지재권 면제 협상 ②수산보조금 미해결 쟁점협상 ③동식물검역 작업 ④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한 WTO 개혁 ⑤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관련 협상 등임.
 - 해당 논의의 잔여 쟁점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우리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협상전략을 준비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WTO의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지역무역협상을 활용하는 다층적(multi-layered) 접근이 필요함.
 - 통상이슈별 규범 도출에 있어 WTO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협상을 다층적으로 활용해야 함.
 - WTO 다자협상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슈별 접근 방식에 따른 우리의 이해를 사전분석하여 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경과

■ MC12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5년 만에 개최된 각료회의로, WTO 다자체제가 회복될 수 있는지 가능해볼 수 있는 자리였음.

- WTO MC12는 기존 WTO 협상 의제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두상황에서 WTO 차원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2022년 6월 12~17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 MC12는 당초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스위스 제네바로 장소가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과 공동 개최하는 형식을 취함.
- MC12는 마지막 타협 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이틀 늦은 6월 17일 폐막됨.

- WTO MC12는 위기에 빠진 WTO 다자체제가 복원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의미도 있었음.

- 형식적 타결에 그친 2017년 MC11 이후 지지부진하던 WTO 협상과 상소기구의 기능 중단사태로 신뢰에 손상을 입은 WTO가 MC12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 존립이 의심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에 따라 MC12에서의 성과도출 여부가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복원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MC12에서는 전통적인 무역 이슈보다 팬데믹 대응과 식량위기 대응 등 최근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가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음.

- MC12에서 기존 도하개발어젠다(DDA) 중 농업과 수산보조금에 대해 논의되기는 했으나, 무역협상의 핵심인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시장개방이나 투자 등 전통 무역 이슈는 의제로 채택되지 못함.

- 그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의료보전 위기, 식량위기 등 최근 세계가 직면한 이슈가 MC12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음.

■ WTO 회원국은 당초 협상기간을 이틀간 연장하면서 타협을 통해 세 개의 각료선언과 여섯 개의 각료결정을 포함하는 제네바 패키지를 도출함.

- 당초 6월 15일 폐막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요국간 타협이 계속되면서 6월 17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졌으며, 결국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음.

- 제네바 패키지는 WTO 개혁 논의를 포함하는 MC12 결과문서(outcome documents)를 비롯하여 ① 식량위기 대응 ② 팬데믹 대응 ③ 동식물검역 ④ 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⑤ 지재권 일시면제 ⑥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⑦ 수산보조금 철폐 ⑧ 소규모경제 ⑨ 지재권 비위반제소 등 총 9개 부속문서로 이루어짐.

- 3개의 각료선언¹⁾: 식량안보, 팬데믹 대응, 동식물검역

1)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과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은 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각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WTO 관행으로 채택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각료결정은 채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분쟁해결에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 6개의 각료결정: 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지재권 일시면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수산보조금, 소규모경제 작업계획, 지재권 비위반제소
- 이 중 소규모 경제, 지재권 비위반제소, 동식물검역은 MC12 이전부터 회원국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MC12에서 추가 논의 없이 각료선언 또는 각료결정으로 채택됨.

글상자 1. 제12차 각료회의(MC12) 개요

- 장소: 스위스 제네바(2022. 6. 12~6. 17)
- 주최: WTO, 카자흐스탄
- 특징: 2020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되면서 공동 개최
- 일정: 1일 차 세계 무역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한 오프닝 세션, 개막식 진행
2일 차 주제별 세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식량위기 대응(WFP 이슈 포함)
3일 차 주제별 세션: 수산보조금, 농업
4일 차 주제별 세션: WTO 개혁, 전자상거래 및 모라토리엄
5일 차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타협(그린룸 회의)
6일 차 최종 패키지 도출 및 폐회식
- 회의 진행: 주제별 회의(Thematic Session-MC12 개최 전 해당 위원회에서 조율한 분야별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국 전체가 참여
그린룸(Green Room) 회의-WTO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비공식협의를 통해 쟁점 타협 수석대표회의(HoD)-당일 진척상황을 검토, 그린룸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안에 대한 최종 추인, 각료결정(선언) 도출
- 결과: 수산보조금, 식량안보, 팬데믹 대응,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WTO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패키지 도출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2_e/mc12_e.htm; "11th hour struggle on WTO deliverables" (2022. 6. 16), Washington Trade Daily 참고.

2. MC12 주요 의제별 쟁점과 합의 내용

- MC12 주요 의제는 크게 팬데믹 대응과 기존 WTO 협상 의제, WTO 개혁 이슈, 기타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의제는 다시 2~3개의 세부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팬데믹 대응: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 미래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식량위기 및 WFP 이슈)
- WTO 협상 이슈: 수산보조금, 농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
- WTO 개혁 이슈
- 기타 이슈: 소규모경제, 지재권 비위반제소, 동식물검역

하여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각료선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가. 팬데믹 대응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적용 면제

가) 쟁점

■ MC12 개최를 앞두고 미국·EU·인도·남아공 등 4개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TRIPs 적용 면제안에 합의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임.

- 인도와 남아공이 제안한 '개도국에 대한 지재권 면제안(IP/CW/669)'과 EU의 '강제실시권을 활용한 대응안(IP/C/W/680)'을 놓고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미국·EU·인도·남아공이 지난 5월 EU의 강제실시권 활용안²⁾을 수용함으로써 타협의 계기가 만들어짐.

■ 각료회의 직전까지 (1) 적격 대상국의 정의 (2) 면제의 범위와 기간을 놓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가 컸음.

- MC12 직전 최종 회람된 각료초안에도 핵심 쟁점인 '적격 대상국(eligible Member)'의 정의와 지식재산권 면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확정 상태([...])로 표기됨.
- [적격 대상국의 정의] 1안은 모든 개도국에 TRIPs 적용 면제가 허용되나, 다만 백신 수출능력을 지닌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방안이고, 2안은 세계 백신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임.
 - 미국은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일부 개도국에 대한 TRIPs 면제 혜택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
 - 반면 중국은 동 권리(TRIPs 면제)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사실상 중국 배제를 의미하는 수출 점유율 기준의 자격 조건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함.³⁾
- [면제 범위] 개도국들은 특히 면제의 범위를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 생산에 필요한 요소와 생산과정 등을 포함한 특허 목록 전체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백신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제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EU와 스위스는 면제의 범위를 코로나19 백신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

나) 합의 내용

■ 적격 대상국에 특정 개도국을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백신 이외 진단 및 치료제의 면제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 이내 협상한다는 합의가 도출됨.⁴⁾

2) TRIPs 제31조 '강제실시권을 활용한 대응'이란 적격회원국이 자국 내 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통보한다는 내용임.

3) WTO 통계에 따르면(WTO-IMF COVID-19 Vaccine Trade Track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vaccine_trade_tracker_e.htm) 세계 백신 수출점유율 상위 5개국은 EU(39.7%), 미국(32.6%), 중국(15.0%), 한국(4.1%), 인도(2.3%)로, 개도국으로서는 중국이 유일하게 세계 백신 수출점유율이 10%를 넘음.

- [적격 대상국] 지적재산권 면제 대상국은 모든 개도국으로 하되, 백신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는 자발적으로 면제해택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구속력 있게 양허하는 방식을 채택함.
- [면제 대상] 지재권 면제 대상은 코로나19백신에 한정하고, 백신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강제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조치는 5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음.
 - 면제 대상을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 생산까지 확대하는 논의는 6개월 안에 하기로 합의
- [국내 실시] 대상국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TRIPs 제31조를 면제받아 다른 적격대상국에 수출할 수 있음.
- [재수출 금지] 대상국은 본 협정에 따라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재수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적절한 보상] 강제실시에 따른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은 본 조치 목적이 '인도주의와 개도국의 공평한 백신 공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함.
 - 종전의 일반 보상 수준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2)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

■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에 대해 큰 이견 없이 합의⁵⁾

-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및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을 채택함.
 - [수출제한 자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무역 관련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거나 공급망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을 약속
 - [무역원활화] 코로나19 및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물품 및 서비스 관련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
 - [투명성 강화] 코로나19와 미래 팬데믹 상황에서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의적절하게 관련 종합 정보를 WTO에 통보
 - [협력 강화] 코로나19 시기에 운용되었던 무역 관련 조치와 경험을 검토하여 미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석작업 실시

3) 식량안보 위기대응 각료선언

■ 식량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은 큰 문제 없이 각료선언으로 채택됨.⁶⁾

- 식량안보 논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제한 조치의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함.
- 식량안보를 위한 회원국의 정책은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고, 아울러 무역왜곡을 최소화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함을 강조함.

4) WTO WT/MIN(22)/30, Ministerial Decision on the TRIPS Agreement.

5) WT/MIN(22)/31,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WTO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edness for Future Pandemics

6) WT/MIN(22)/28,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Emergency Response to Food Security.

- 식량안보를 위한 긴급조치는 무역왜곡을 최소화해야 하며, 한시적 조치로서 특정 목표를 위해서만 운영하되 투명하고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함.
 - 적절한 식량비축이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이 공공비축 초과 재고분에 대해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시장에 방출하도록 허용
 - 농산물 교역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치 도입 시, 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통보조치 이행
- 단 노력조항으로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있음.

4)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 구매분에 대한 수출제한 금지

가) 쟁점

■ WFP의 인도적 목적 구매분에 대한 수출제한 금지를 두고 일부 개도국이 반대함.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WFP의 인도적 차원 식량구매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다수 국가가 이에 동의하면서 WFP에 관련 각료초안이 도출됨.⁷⁾
- 그러나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이 국내 식량위기 발생 시 WFP의 인도적 구매분일지라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대립함.
- 이에 각료회의를 앞두고 최종 회람된 WFP 관련 각료초안에는 수출제한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WTO 규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식량안보 목적의 수출제한을 허용하는'⁸⁾ 내용이 공존하게 됨.

나) 합의 내용

■ 각료초안의 상호 모순된 조항이 유지된 채 각료결정이 채택됨.⁹⁾

- 각료결정 제1항에서는 WFP의 비상업적·인도적 목적의 구매 식량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수출금지나 제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제2항에서는 회원국이 WTO 관련 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국내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⁰⁾
- 이에 따라 WFP 구매분일지라도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는 수출제한 조치를 운용할 수 있음.

나. WTO 협상 이슈

7) WT/MIN(22)/W/18.

8) 긴급조치는 최소한으로 무역왜곡적이고 일시적·특정적이며, WTO 규범에 맞게 통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9) WT/MIN(22)/29, Ministerial Declaration on World Food Programme Food Purchases Exemption from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10) Decides as follows:

1. Members shall not impose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foodstuffs purchased for noncommercial humanitarian purposes by the World Food Programme.
2. This Decis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by any Member of measures to ensure its domestic foo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

1) 농업

■ 핵심 쟁점인 보조감축과 시장접근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MC12에서는 관련 협상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료초안이 회람됨.

- 농업 분야 향후 작업계획은 7개 세부 이슈¹¹⁾에 대해 MC13까지 협상을 계속하여 가시적 성과 및 세부원칙을 도출한다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었음.¹²⁾
- 미국·EU·중국·케언스그룹 일부 등은 이러한 농업 분야 각료초안에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일부 개도국들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PSH: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 보조’에 대한 영구 해법¹³⁾을 요구하면서 농업 분야 각료초안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함.
 - 인도, 아프리카 그룹, G33 개도국 그룹은 ① PSH 영구해법 도출 ② PSH의 감축보조금 계산방식 개선 ③ 감축보조 한도 초과 시 제소 및 상계조치 자제 ④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도국 요청 시 비축잉여분의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제안을 발의¹⁴⁾
- 미국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동 제안이 각료회의 직전에 회람되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제안에 따랐을 경우 공공비축 구매에 제한이 없어지고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WTO 분쟁해결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력히 반대함.

■ MC12에서 농업분야 합의도출을 위한 절충이 시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함.

- 미국이 MC12 각료회의 중반에 인도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도출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음.
 - 미국은 인도 등 개도국의 PSH에 대한 영구해법 요구에 대응하여, MC13까지 PSH 영구해법 도출과 채택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강한 표현의 문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미·인도 양국간 절충안이 다자화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반대에 막혀 결국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
- 합의 실패로 미국과 인도가 실제 입게 될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향후 농업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진 측면이 있으나, DDA 종료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농업 분야 합의 도출 실패는 나쁘지 않은 선택임. 아울러 인도에 PSH에 대한 무리한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존재
 - 인도 역시 합의 실패로 PSH에 대한 영구해법 도출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나, 영구해법이 도출될 때까지 PSH 보조 정책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¹⁵⁾이므로 현 상태의 유지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농업 분야의 향후 협상 전개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됨.

11) ① 국내보조 ② 시장접근 ③ 수출경쟁 ④ 수출제한 ⑤ 면화 ⑥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PSH) ⑦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12) WT/MIN(22)/W/19, Draft Ministerial Decision on Agriculture.

13) 지난 2013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MC9)에서 PSH에 항구적 해법을 MC11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실제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MC12에서도 중요한 고비마다 결림돌로 작용했음. PSH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진교 외(2013),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외(2016),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MC10)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외(2018),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평가와 시사점』 참고.

14) WT/MIN(22)/W/4,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Proposal by the African Group, the ACP, and G33.

15) 발리각료결정(MC9)에서 회원국들은 영구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PSH 관련 보조에 대한 WTO 제소를 자제하기로 합의함.

2) 수산보조금

가) 쟁점¹⁶⁾

■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과 과잉어획(overfishing) 보조금 철폐와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게 대립함.

- 주요 수산보조금 중 불법어업(IUU) 및 남획어족자원 관련 보조금의 철폐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큰 이견이 없었으나,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 보조금 철폐와 관련한 개도국 우대조치를 두고, 개도국과 수산강국¹⁷⁾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
 - [유예기간] 수산강국은 개도국의 보조금 철폐 유예기간을 7년 또는 2030년까지로 제시한 반면, 인도는 25년을 주장함.
 - [철폐 예외] 세계어획량(global volume of marine capture production) 비중이 X% 이하인 경우 관련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도국 예외조치의 도입에 대해 인도 등 개도국들은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각료초안에는 0.8%로 제시).
 - [저소득, 자원빈곤 생계형 어업 관련 예외] 개도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할 것을 요구함(각료초안에는 12 또는 24해리로 제시).
- 한편 중국은 각료초안에 나와 있는 ‘세계어획생산량의 X%¹⁸⁾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은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 보조금 관련하여 개도국 우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에 이의를 제기함.
 - 2020년 기준, 중국은 세계어획량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생산국이며,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8%), 페루(7%), 러시아(6%), 미국(5%), 인도(5%), 베트남(4%), 일본(4%), 노르웨이(3%), 칠레(2%) 순임.¹⁹⁾

■ 불특정 유류보조에 관해서도 회원국간 견해차가 컸음.

- 어선에 대한 연료 공급이 아닌 불특정 유류보조(non-specific fuel) 규제를 두고 회원국간 견해차가 컸음.
- 각료초안에는 불특정 유류보조금에 대한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시도함.
- 이에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은 불특정 유류보조금도 강력히 규제(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함.

■ 강제노동과 관련된 통보의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임.

- 미국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강제노동을 WTO 관련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이의제기함.
- 각료초안에 따르면,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선박과 소유주를 수산보조금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8.3.b조).

16) WT/MIN(22)/W/20,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Draft text; WT/MIN(22)/W/20/Add.1,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Draft text, Addendum.

17)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수산강국임.

18) 각료초안을 놓고 절충과정에서 10%가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

19)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Table 2, Marine Capture Production: Major Produc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나) 합의 내용²⁰⁾■ 회원국들은 불법어업(IUU 어업)과 남획어족자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 합의함.²¹⁾

- [IUU 어업] 모든 회원국은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철폐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내규범을 제정하도록 합의하였으며, IUU 어업 지정 및 보조금 폐지 관련된 절차 세부사항을 규정함.
- [남획어족자원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어족자원의 복원을 위한 보조금이나 복원을 위한 다른 조치가 시행될 때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합의함.
- [기타 보조금 공해상의 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자국을 기국(旗國)으로 하지 않는 선박이나 어족자원 량이 불명확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히 주의하며 지급을 적절히 자제(special care and exercise due restraint)하도록 함.
 - 공해상의 어업활동의 경우 제한 받는 보존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획의 가능성이 큼.²²⁾
-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 보조금 철폐, 면세유 등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함.
 - 결과적으로 견해차가 컸던 개도국 예외조항과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예외 비적용 각주가 모두 삭제됨.

■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포함됨

- [개도국 예외] 3.8조(IUU 어업)와 4.4조(남획어족자원)에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와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이 2년간 유예됨.
- [최빈개도국 특칙]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를 자제하고, 관련된 문제 해결에서 최빈개도국(LDC)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 [기술지원] 개도국의 협정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보조 및 능력 배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 각 회원국은 적절한 통보 의무를 지는 것에 합의했으나, 불특정 유류보조금, 강제노동 관련 통보 의무는 최종안에서 삭제됨.

- 각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어업의 대상어족자원량, 어획능력, 보조금 수혜 어선, 어획량, 어족자원 관리 보존조치에 대해 통보해야 함.
 - 각료초안은 관련 보조금을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에만 예외조항(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우, 개도국 예외의 경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 문구는 최종 합의안에서 삭제됨.²³⁾
- 불특정 유류보조에 대한 통보 의무가 삭제됨.²⁴⁾
- 회원국들은 매년 수산위원회에 'IUU 어업을 했다는 결정을 받은 어선이나 기업(operator) 목록'을 통보하도록

20) WT/MIN(22)/33, WT/L/1144,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Ministerial Decision of 17 June 2022.

21) 보조금은 수혜 선박의 선적지나 수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함.

22) IISD(2022), "WTO members clinch a deal on fisheries subsidies,

"<https://sdg.iisd.org/news/wto-members-clinch-a-deal-on-fisheries-subsidies/>.

23) 각료초안(WT/MIN(22)/W/20) 8.7조

24) 각료초안(WT/MIN(22)/W/20) 8.2조

록 합의함.

- 강제노동을 사용한 선박과 기업에 대한 통보 의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관련 문안 역시 삭제됨.²⁵⁾

■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위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며, 만약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협상 전체가 종료되는 일몰 조항이 도입됨(일반이사회에서 별도의 관련 결정이 없을 경우).

3)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가) 쟁점

■ 전자상거래 관련 기존 핵심 쟁점²⁶⁾에 대해 WTO 회원국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MC12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유예(모라토리엄) 연장만을 다룸.

- MC12 이전까지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일부 분야(전자인증 및 서명, 전자계약, 공공데이터 개방, 소비자 보호, 투명성)에 대해 합의했으나, 여전히 컴퓨팅 설비 현지화, 데이터 이동의 자유, 개인정보 등 핵심 부분에는 회원국간에 의견 차이가 큼.
-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모라토리엄)는 임시조치로서 1998년 WTO에서 전자상거래 논의를 개시한 이후 매 각료회의마다 연장을 합의해 왔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개도국이 MC12를 앞두고 관행적인 모라토리엄 연장에 반대함.
 - 개도국들은 무역의 디지털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무관세조치에 따른 관세수입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전환 이익의 분배 개선과 디지털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관세화 조치를 제안함.²⁷⁾
- 이에 선진국은 무관세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Facebook, Amazon, Netflix 등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제한되고,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축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장을 강조함.

나) 합의내용

■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에 합의함.

- 일반이사회가 전자전송물에 대한 관세유예의 범위, 정의,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MC13를 개최할 경우, MC13까지 연장

25) 각료초안(WT/MIN(22)/W/20) 8.3조.

26) ① 전자상거래 원활화(전자인증,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송장, 전자결재 서비스, 종이 없는 무역 등) ② 개방과 전자상거래(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국경간 정보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등) ③ 신뢰와 전자상거래(온라인 소비자보호, 스팸, 소스코드, 개인정보보호 등) ④ 공통 이슈(투명성, 협력, 사이버보안 등) ⑤ 통신 ⑥ 시장접근.

27) WTO, "MC12 Briefing Note: E-commerce,"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2_e/briefing_notes_e/bfecom_e.htm(검색일: 2021. 12. 16).

- 2023년 12월 31일까지 MC13 미개최 시, 2024년 3월 31일로 종료(단, 일반이사회에서 별도로 연장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다. WTO 개혁 이슈

1) WTO 개혁 이슈

가) 쟁점

■ WTO 개혁 작업반 구성²⁸⁾

- EU, 브라질과 미국 등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WTO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임.
- 반면 일부 국가는 일반이사회 관련 세션에서 일반이사회 의장의 주도로 WTO 개혁 이슈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이를 통해 일반이사회 회의 관련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두 그룹 모두 다음 각료회의(MC13)를 협상 시한으로 삼고 있으나, 전자는 MC13에서 WTO 개혁과 관련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자는 입장임.

■ 개혁 논의의 범위²⁹⁾

- 인도 등 일부 회원국은 WTO 개혁에 있어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과 정책공간(policy space)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인도의 제안에 반대하며 인도가 제안한 문구가 WTO 개혁에 대한 대안을 축소시키고, 개발과 정책공간을 우선시하는 것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를 확대하는 조치라며 반대함(미국은 WTO의 세 가지 기능(분쟁해결, 협상, 정책검토) 회복 등 일반적인 내용을 선호).

■ 복수국간 협상을 WTO 내에 포함할지 여부³⁰⁾

- 많은 개도국들은 복수국간 협정의 WTO 규범화를 위한 마라케시 합의문(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2.3조, 제3.2조, 제9조의 수정에 반대하며, 다자협상이 유일한 협상수단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국가는 WTO 내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 이후 연락처 조치

- LDC 그룹은 LDC 지위를 졸업함에 따라 무역 관련 지원조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처 조치의 일환으로 특혜적 시장접근을 6~9년 연장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³¹⁾

28) 비공식 성과 보고서(RD/GC/17/Rev.2) para.8.

29) 비공식 성과 보고서(RD/GC/17/Rev.2) para.8.

30) 비공식 성과 보고서(RD/GC/17/Rev.2) para.10.

- 16개 국가가 LDC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보이며 앙골라,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솔로몬섬은 2024년부터 졸업이 확정됨.³²⁾
- 더불어 LDC 분과 위원회에서 LDC 지위를 졸업한 국가들을 위한 지원패키지를 준비하도록 하여 2023년 일반이사회 첫 회의때 보고할 것을 주문
- 지원조치는 (1) 개도국 특별대우와 관련된 WTO 규정이나 결정, 면제 (2) WTO 체제하 제공되는 LDC를 위한 기술지원이나 역량 강화 설비 (3) LDC를 위한 그 외 조치나 면제를 포함
- 일부 국가는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나 미국은 전면적 연장에 반대하며 사안별 접근 방식을 선호함.³³⁾

나) 합의 내용³⁴⁾

■ 개도국 우대의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개도국 우대조치가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유의미하게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개도국 우대가 WTO 및 관련 협정의 일부임을 재확인함.
- 동시에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함.³⁵⁾

■ WTO의 적절한 기능 회복을 위해 WTO 개혁 논의를 추진하고 복수국간 협상의 근거를 마련함.

- WTO의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논의를 추진하도록 함
- 일반이사회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되, WTO 일부 회원국이 모여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WTO 개혁 논의에서 복수국간 협상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됨.³⁶⁾

■ 상소기구를 포함, 분쟁해결 제도가 2024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도록 함.

- 분쟁해결제도와 관련된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정상화된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을 위한 논의 추진에 합의함.

■ 최빈개도국(LDC) 지위를 졸업하는 회원국의 연락처 지원에는 동의하나, 특혜시장 접근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회원국들은 LDC 지위 졸업에 따른 무역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조치 상실 등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WTO 내 특정 조치들이 LDC의 순조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데 동의함.³⁷⁾
-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혜원산지 조치, 서비스 무역 관련 우대,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31) WT/GC/W/829, "A smooth transition package in favour of members graduating from the LDC category."

32) 방글라데시, 키리바티, 라오스, 네팔, 투발루는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CDP)에서 졸업을 권고했으며, 미얀마, 동티모르는 결정이 연기됐고 캄보디아, 코모로스, 지부티, 세네갈, 잠비아는 최근 처음으로 졸업 요건을 달성함.

33) "US silent on LDCs preference plan"(2022. 5. 26), Washington Trade Daily.

34) WT/MIN(22)/24, MC12 Outcome Document.

35)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WTO agreements should be precise, effective and operational.

36) For greater certainty, in this context, this does not prevent groupings of WTO Members from meeting to discuss relevant matters or making submiss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General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37) WT/MIN(22)/24, MC12 Outcome Document, para.5.

노력을 지속하도록 함.³⁸⁾

■ 환경, 서비스 무역, 여성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환경] UN의 지속가능개발 어젠다(SDG) 달성에 WTO의 기여가 중요함을 인지하며,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함.³⁹⁾
- [서비스 무역] 서비스가 생산과 고용에 중요하고, 코로나19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며 서비스 무역의 회복과 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 필요성 확인⁴⁰⁾
- [여성과 중소기업]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함.⁴¹⁾

라. 기타 이슈

1) 소규모경제⁴²⁾를 위한 작업계획

■ 소규모경제를 위한 작업계획 지속에 대해 각료결정을 채택함.⁴³⁾

- 무역개발위원회(CTD: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소규모경제 별도 세션(Dedicated Session)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계획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정함.
 - CTD는 소규모경제가 처한 어려움 및 관련 제안서를 확인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고 일반이사회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사무국은 논의 진행을 위한 관련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함.

2) 지재권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및 상황제소(situation complaints)

■ 다음 각료회의까지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⁴⁴⁾ 및 상황제소⁴⁵⁾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각료결정을 채택함.⁴⁶⁾

- 본 결정에서는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 및 상황 제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유예조치를 다음 각료회의까지 연장함.

38) WT/MIN(22)/24, MC12 Outcome Document, para.8.

39) WT/MIN(22)/24, MC12 Outcome Document, para.14.

40) WT/MIN(22)/24, MC12 Outcome Document para. 10.

41) WT/MIN(22)/24, MC12 Outcome Document para. 13.

42) 소규모경제는 1999년-2004년 사이 평균적으로 (1) 상품 무역 비율이 0.16% 미만이고 (2) 비농산물에 대한 무역 비율이 0.1% 미만이며 (3) 농산물에 대한 무역 비율이 0.4% 미만인 경제를 뜻함;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11_e/brief_svc_e.htm.

43) WT/MIN(22)/25, WT/L/1136, Work Program on Small Economies.

44)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는 어떤 회원국의 행위가 WTO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행위로 인하여 다른 특정 회원국이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을 의미함.

45) 상황제소는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외에 협정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기타 다른 상황이 존재(the existence of any other situation)하는 경우 이를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함(세종국제통상법센터, 통상 News Brief 2022, vol. 3, p. 3).

46) WT/MIN(22)/26, TRIPS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Ministerial Decision.

- 해당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의 유예 결정은 TRIPs 협정 체결 당시 5년간(1995~99년) 유예되었으나, 이후 매 각료회의마다 유예가 연장되어왔음.⁴⁷⁾
- 비위반 및 상황 제소가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될 때 그 범위와 제소 형태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MC13까지 계속 수행하기로 함.

3) 동식물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 현대화를 위한 각료선언이 채택되었으며, SPS 위원회는 작업계획의 결과를 MC13에서 보고할 예정임.⁴⁸⁾
- 미국, EU, 스위스, 중국, 일본, 한국 등 45개 국가와 그룹이 SPS 현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1995년 SPS 협정문 채택 이후 (1) 인구 증가 (2) 기술의 발달 (3) 기후변화 (4) 지속가능 농업과 생산방식의 중요성 증대 (5) 해충의 확산 (6) SPS 조치로 위장된 무역제한 조치 활용 등의 변화에 직면함.
- SPS 위원회는 작업계획을 구성하여 SPS 이행과 적용을 통해 (1) 세계 식량안보 도모 (2) SPS 조치의 사용이 과학적 근거와 원칙에 기반하도록 촉진 (3) 식품, 동물·식물, 상품의 안전한 무역 강화 (4) 국제규범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5)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참여와 지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MC13에서 작업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할 예정임.

47)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1_e/briefing_notes_e/bftrips_e.htm

48) WT/MIN(22)/27, Sanitary and Phytosanitary Declaration for the Twelf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Responding to Modern SPS Challenges-Ministerial Declaration.

표 1. MC12 주요 의제와 쟁점, 합의 내용

의제	핵심 주제	쟁점	주요 합의	
팬데믹 포함 최근 글로벌 위기 대응	개도국 백신 생산을 위한 지재권 일시 면제 여부	a. 적격 대상국 b. 특히 면제범위 c. 면제기간	a. 개도국(단 자발적 제외 개도국 존재) b. 강제실시권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관련된 특허 면제에 합의(단 진단·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6개월 안에 재개) c. 5년(개도국)	
	식량위기 대응	a. 식량위기 대응 무역조치	a. 식량안보를 위한 무역원활화 b. 불필요한 수출제한 금지조치 자체 c. 무역제한 조치는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 d. 최빈개도국, 순식량수입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 등	
	WFP (세계식량계획) 수출제한 금지	a. 인도적 목적 WFP 구매분 수출제한 조치 가능 여부	a. 인도적 목적의 WFP 구매 계약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금지 b. 단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는 수출제한 조치 가능	
WTO 전통 의제	농업	향후 작업계획	a. MC13까지 세부협상원칙과 작업계획 도출 b. PSH 영구해법 도출 등	합의 실패
	수산 보조금	과잉어획 기여 보조금 철폐에 대한 개도국 우대	a. 과잉어획 보조금 관련 개도국 특혜 - 유예기간 - 어업 범위 b. 불특정 유류보조 철폐 여부 c. 강제노동	a. 불법어업(IUU)과 남획어종어획에 대한 보조금만 철폐 b. 과잉어획보조금, 불특정 유류보조는 동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 협상을 통해 합의 도출 계획 c. 강제노동 내용은 삭제
	전자 상거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a.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	a. MC13까지 모라토리엄 연장 - '23.12.31까지 MC13 미개최 시 '24년 3월 말 자동 종료(단, 일반 이사회에서 연장 결정 가능)
WTO 개혁	논의 범위 및 협상방식	a. 개혁작업반 설치 b. 논의 범위 c. 복수국간 협상방식 인정 여부	a. 일반이사회에서 개혁 논의 수행 및 MC13에 보고(단, 회원국 복수국간 협상은 가능) b. WTO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논의 (2024년까지 DSU 기능 회복 포함) c. 환경과 , 서비스 무역, 여성, 중소기업 무역 중요성 강조	
기타	소규모경제 지원 동식물검역 TRIPs 비위반제소	-	a.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 및 이행 노력 지속 b. SPS 현대화를 위한 논의 착수 c. TRIPs 비위반제소 유예 연장	

자료: 저자 작성.

3. 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가. MC12 평가

■ 제네바 패키지의 도출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기상황에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 다자통상협상 지속을 위한 합의 도출,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은 MC12에서 거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WTO 회원국이 협력하여 개도국 내 백신 생산을 가능하게 한 점은 비록 5년의 한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농산물 교역의 17% 이상이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⁴⁹⁾, 최빈개도국 및 순식량수입 개도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제한 및 금지조치의 자제와 통보 강화를 이끌어낸 것도 비록 법적 구속력이 약한 노력조항이기는 하나 다자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분쟁해결제도와 WTO 개혁에 대한 다자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이번 MC12가 갖는 성과임.
 - 특히 20년 이상을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불법어업 및 남획어종에 대한 보조 금지를 다자간 합의로 도출해낸 것은 2013년 발리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합의 도출 이후 처음 있는 성과임.
- 다만 일부 협상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됨.
 - WTO 협상의 핵심인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은 종전과 같이 이번 MC12에서도 의제화되지 못했으며, 농업은 최종 타협과정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고, 수산보조의 합의수준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WFP의 인도적 목적의 식량구매분 대한 수출 제한 금지 합의'에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각료결정의 유효성을 손상시켰다는 평가도 있음.
- WTO 체제의 위기상황에서 도출된 제네바 패키지는 WTO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성과로 볼 수 있음.

■ 각료회의 최종결과문에 포함된 개도국 우대 및 WTO 개혁 관련 내용은 향후 WTO 논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최종결과문에서 개도국 우대를 WTO 협상의 중요한 부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조치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명시한 점은 향후 WTO 협정의 개도국 우대조항 개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관련 각료결정에도 백신 생산능력을 갖춘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면제 혜택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양허하도록 장려하고 있어 향후 개도국 우대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음.
- WTO의 기능 개선을 포함한 WTO 개혁 논의는 일반이사회 및 그 하부기관이 담당하지만 동시에 회원국

49) 강문수, 정민지(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안보 리스크와 전망」, p. 10.

그룹도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WTO 개혁 논의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WTO 개혁을 위한 복수국간 협상은 미국 등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향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WTO 개혁 논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소기구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의 원활하고 완전한 작동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합의에 따라 향후 분쟁 해결절차 자체의 개혁 논의도 본격화 될 수도 있음.

■ MC12의 성과도출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컸음.

- 미국은 MC12 제네바 패키지 도출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함.
 - MC12 회의기간 동안 미국은 인도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절충을 시도했으며, 4자(미국, EU, 인도, 남아공) 그린 룰 회의에서도 리더십을 보이면서 최종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WTO 다자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미국이 이번 MC12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리더십을 보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함.
 - 전통 우방과의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는 바이든 정부 정책의 일환
 - 다자무대에서 우호세력을 확대·구축하려는 의도
-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향후 WTO 다자협상 타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 시사점

■ MC12 제네바 패키지에 따른 후속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 준비가 필요함.

- 잔여 쟁점들이 오는 가을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3년 12월 말 이전에 제13차 WTO 각료 회의(MC13)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⁵⁰⁾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가 필요함.

① 백신 지재권 면제범위 확대 관련 협상

- 백신 지재권 면제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진단과 치료제 등으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논의하기로 합의한바, 조만간 관련 후속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59개 개도국을 대표하여 인도, 남아공,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이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하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 협상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백신 및 진단 치료제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국가로서 입장 정립을 통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50) 현재 UAE와 카메룬이 MC13 개최를 신청한 상황임. 한편 브라질이 각료회의 이전에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1년마다 여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요 참가국으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② 수산보조금 미해결 쟁점 협상

- 과잉어획 보조금, 불특정 유류보조금 등 우리 수산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상이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이후 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상 논리를 개발하여 협상에 임해야 함.
 - MC12에서 합의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를 위해 WTO 전체 회원국의 2/3 이상이 국내비준을 마치고 WTO에 비준결과를 기탁해야 하므로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이번 합의문에서 삭제된 강제노동 문제도 재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수산보조금 통보 및 투명성 제고(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수산보조금 통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불법어업이나 남획어종 어획에 대한 국내 규제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③ 동식물검역 작업

- WTO 출범 이후 25년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동식물검역(SPS)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검토할 회의가 개최되고, 관련 논의결과가 MC13에 보고될 예정임.
- 동 회의에서는 특히 동식물검역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기준이나 지침, 권고의 활용,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SPS 조치, 동식물 검역조치의 지역화, 기술협력 등을 다루고, 그 결과를 권고 형식으로 MC13에 보고할 예정
- MC13에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동식물검역 관련 각료결정이 도출될 수 있음.
- 각료결정이 SPS 협정문 변경방식이 아닌 SPS 위원회의 합의된 지침 형식으로 발표된다면, 관련 SPS 패널에서의 판단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작업회의에서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함.

④ WTO 개혁 관련 (복수국간) 협상

- WTO 개혁 관련 선진국 중심의 복수국간 협상이 공식 출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 특히 관련 협상을 주도해 WTO 다자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규범에 기반한 교역환경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므로 WTO 개혁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등 국제규범이 형성되기 시작한 분야에서 다자 차원의 합의된 규범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함.
 - 다자협상에 대한 기여가 그린룸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관련 협상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여 디지털 무역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함.

■ WTO 다자/복수국간 협상과 지역협상을 활용하는 다층적(multi-layered) 접근이 필요함.

- 미국의 최근 동향을 보면 WTO 다자/복수국간 협상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지역 차원의 협상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
 - 수산보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WTO 다자무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문제는 EU, 일본과 함께 WTO 복수국간 협력 방식을 선호
 - 한편 지역 차원의 협력에서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 아시아에서는 IPEF를 이용하고 있음.
 - 결국 미국은 WTO 다자무대를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지역적 접근을 활용함으로써 WTO 다자 및 지역 협력을 다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향후에도 WTO 다자협상의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다층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이슈별 접근 방식에 대한 사전 분석 필요(예: 환경 이슈를 WTO 다자/복수국간 협상에서 다룰 때와 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협정에서 다룰 때의 관철의 용이성, 이익의 규모, 이행의 비용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MC13이 사실상 새로운 라운드 출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

- MC13에서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복수국간 협상을 추진하면서 DDA의 종료를 선언한다면 사실상 새로운 다자협상 라운드가 출범함을 의미함.
 - MC13에서 성과도출에 실패하면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심 의제를 중심으로 복수국간 협상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예: 전자상거래, 노동과 무역, 무역과 환경 등).
 - 여기에 WTO 개혁을 위한 작업반이 만들어져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MC13은 사실상 DDA와는 무관한 서비스나 제도 중심의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을 의미함.
 - 이 경우 DDA는 자연스럽게 축소, 조정, 또는 폐기되는 전망이 가능함.
- 이에 따라 MC13에서 사실상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선진국 관심 이슈 및 신통상 이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 디지털이나 전자상거래 이외 여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 무역규범의 틀 내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규범 형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규범을 정비해야 함. **KIEP**